

대전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11319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상현, 이흥철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26.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11438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와 피고 사이에 2018. 11.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에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31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2면 18행의 “피고 회사”를 “A”로 고치고, 그 이하에 나오는 ‘피고 회사’를 모두 ‘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4면 3행의 “나.”를 “다.”로, 8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친다.

『나. A는 2018. 4.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A는 2018. 6. 14.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F은행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1,360만 원, 채무자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1심판결 5면 19행의 “2018. 11. 20.”을 “2018. 11.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8행의 “2019. 2. 20.”을 “2019. 4. 11.”로, “193,104,808원”을 “178,757,988원”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위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나. 쟁점별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1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X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피고로부터 2018. 4. 26. 2억 5,000만 원, 2018. 5. 12.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26.,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고, 오히려 2019. 3. 28.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 A는 2018. 11. 및 2019. 1. F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한 바 있고, 2019. 1. 31. 이후 C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7호는 A의 사업장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A는 별도의 최고 없이도 원고에게 보증금액을 사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음성군이 2019. 2. 26. A의 사업장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 약정 조항에 따라 2019. 2. 26.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제1심이 적절히 실시한 여러 사정에다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A는 사업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융통받는 등의 사정 없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원고를 포함한 A의 일반 채권자들, 특히 원고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 비로소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만일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위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앞서 본 F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공동담보로 확보할 수 있었던 채권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위와 같은 가등기의 설정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가등기는 비록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원금만 1억 원이 많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위 가등기에는 채권최고액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추가 대여금(예컨대 앞서 본 2019. 3. 28.자 1,700만 원)이나 이자 등 채권도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담보가등기관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어 이 사건 가등기의 담보적 효력이 이 사건 근저당권과 법률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가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마쳐졌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등기 설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별도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 포착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행위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선의 여부도 위 매매예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당시 A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선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의 반복된 요구에 따라 변제기를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위 차용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다.

②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의 모친이자 대리인인 X은 A의 실질적 대표인 Y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회피하며 시일을 지체하자, Z을 대동하고 A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Y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계속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고 피해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Z은 ‘Y이 담보 제공을 해주지 않아 X과 함께 A의 사업장을 50번은 더 찾아간 것 같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X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에는 A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

